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 - 23
----------	---------

제출년월일 : 2015.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1995. 5. 3.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여년이 경과되어 일부 내용이 조례 제정의 근거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의 정의 정비(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u>소득증대사업과 공 공시설사업</u>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시행하는 <u>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u>

나.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 관련 이행협약서」에 따른 지원금
- 회계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다. 지원금의 이월사용 규정 삭제(안 제6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근거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6조의2

나.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4. 12. 16. ~2015.1.15.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3.12)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각각 “발전소주변지역”으로, “이의 운영에 관하여”를 “그 운용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 “마포구에 발전소 주변지역”을 “마포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으로, “설치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 관련 이행협약서」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
3. 회계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회계운영”을 “회계 운용”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발전소 주 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u>에 따 라 <u>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 원” 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 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 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u>조례에서 지원사 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 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 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u></p> <p>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u>서울특 별시 마포구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 <u>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u>----- ----- <u>발전소주변지역-</u> ----- ----- <u>그 운용에</u>----- ----- --.</u></p> <p>제2조(정의) 이 <u>조례에서 “지원 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u></p> <p>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 - <u>마포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u> -----</p>

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세출은 제2조 규정이 정하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하되,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관련, 별표1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서울복합화력 1·2호기 건설 관련 이행협약서」 제4조제 4항에 따른 지원금
3. 회계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삭 제>

제7조(준용) -----
--- 회계 운영-----
-----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세입) 및 제5조(세출)
2. 비용추계의 전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
 - 비용추계기간 : 2015. 1 ~ 발전소 가동 중지 시까지(계속)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기본지원금	299,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219,000
	특별지원금	0	5,318,000	3,882,000	0	0	9,200,000
	중부발전지원금	900,000	3,268,000	1,832,000	0	0	6,000,000
	소계(a)	1,199,000	8,816,000	5,944,000	230,000	230,000	16,419,000
세출	기본지원금	299,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219,000
	특별지원금	0	5,318,000	3,882,000	0	0	9,200,000
	중부발전지원금	900,000	3,268,000	1,832,000	0	0	6,000,000
	소계(b)	1,199,000	8,816,000	5,944,000	230,000	230,000	16,419,000
□ 총 비용(a-b)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이후 계속)	합계
의존	소계	299,000	5,548,000	4,112,000	230,000	230,000	10,419,000
	기본지원금	299,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219,000
재원	특별지원금	0	5,318,000	3,882,000	0	0	9,200,000
	중부발전지원금	900,000	3,268,000	1,832,000	0	0	6,000,000
기타	소계	900,000	3,268,000	1,832,000	0	0	6,000,000
	중부발전지원금	900,000	3,268,000	1,832,000	0	0	6,000,000
합계		1,199,000	8,816,000	5,944,000	230,000	230,000	16,419,000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신명승
연락처	02-3153-939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특별지원금 및 중부발전지원금 152억원 사용
- 기본지원금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익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